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60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4. 21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간 소관 부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체육국 소관을 복지도시위원회로 조정하고, 정책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균형과 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이관함(안 제3조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건설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~ 자. (생략)</p> <p>3. 복지도시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마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~ 아. (현행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~ 바. (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김자영
연 락 처	02-3153-6084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 다만,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6조(교육체육국) ① 교육체육국에 교육청소년과·평생학습과·보육정책과·체육진흥과를 둔다.

② 교육체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사업 추진, 교육경비보조금 지원,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, 교육시설 관리,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,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, 독서진흥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3. 영유아보육 시책 추진 및 보육시설 설치·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 생활체육 진흥, 생활체육시설 설치·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